

5호

행정명령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 센터 상황에 따른 브롱크스, 킹스, 뉴욕, 리치몬드, 퀸즈 카운티 재난 비상사태 선포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 센터(Rikers Island Correctional Center)에 최근 몇 달간 심각한 인력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의 상황이 재소자 및 직원에게 불안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교정 센터를 감독하도록 지정된 연방 감독관이 누에즈 독립 감독관(Nunez Independent Monitor) 11번째 시설 보고서에 "심각한 무질서와 혼돈 상태"를 보고했기 **때문에,**

올해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재소자 중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상 법원 출석 사용을 서용하여 처리절차를 신속화하고 교정부 인력을 이송 및 피고 출석, 주거 감독 및 안전에 재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브롱스크, 킹스, 뉴욕, 리치몬드, 퀸즈 카운티에 2021년 9월 28일부터 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또한, 주 재난 비상사태 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그 일부를 임시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본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내용을 임시 중단 및 변경합니다.

- 법원이 모든 일방 또는 증인의 직접 출석을 허용하고 전자 출석 수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정절차법(Criminal Procedure Law) 182조. (i)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및 상급 법원 정보, 캘린더 콜, 법원 컨퍼런스 또는 신청 주장에 대한 대법원 조정, (ii) 피고의 동의를 있을 때, 대배심 앞에서 피고의 동의, 모든 주장, 판결, 또는 증언, (iii) 피고 또는 검사의 동의를 있을 때, 모든 증거 청문회 또는 비배심원 심리.

2021년 9월 2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